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2.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2. .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박왕규 의원 등 7명(서보영, 고명욱, 도하석, 김장관, 강한곤, 이진환)
- 발의일자: 2025. 1. 23.
- 회부일자: 2025. 1. 23.
- 검토기간: 2025. 1. 23. ~ 1. 31.

2. 제정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포함하고 이들의 권리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로 변경
- 지원대상을 “경비원” 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 로 확대함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안 제1조 ~ 제7조)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5조의2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 23. ~ 2. 4.):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되었던 인권증진 대상에 미화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한 사안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하고, 인권증진 대상을 공동주택 경비원에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확대함에 따른 각 조항별로 규정된 “경비원” 을 “경비원 등 근로자” 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인권보호 증진 대상을 미화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경비원”이란”을 ““경비원 등 근로자”란”으로, “경비 업무”를 “경비·청소·관리 업무”로, “사람”을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을 “경비·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비원은”을 “경비원 등 근로자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비원을”을 “경비원 등 근로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비원이”를 “경비원 등 근로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비원”을 각각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비원을”을 “경비원 등 근로자를”로, “경비원 차별금지”를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u>경비원</u>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달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경비원</u>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경비원</u>”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u>경비 업무</u>에 종사하는 <u>사람</u>을 말한다. 3. “<u>입주자 등</u>”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u>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u>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경비원 등 근로자</u>----- ----- ----- ----- <u>경비원 등 근로자</u>-----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경비원 등 근로자</u>”란 ----- ----- <u>경비·청소·관리 업무</u>----- ----- <u>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u>-----. 3. ----- ----- ----- ----- <u>경비·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u>----- -----.

4. (생략)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생략)

4. (현행과 같음)

5. ----- 경비원 등 근로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경비원 등 근로자-----

-----.

② ----- 경비원 등 근로자-----

----- 경비원 등 근로자-----
-----.

③ ----- 경비원 등 근로자-----

-----.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생략)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 경비원 등 근로자-----

-----.

1. 경비원 등 근로자를 -----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

3. (현행과 같음)
4. ----- 경비원 등 근로자-----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 경비원 등 근로자-----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경비원 등 근로자-----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
--- 경비원 등 근로자를 -----
-----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

②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